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플랫폼 기반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4.01.01.~2024.12.31.(3차년도)
- 장비명 : 무선통신 송수신 시험장비
- 예산액 : 180,000천원

□ 긴급입찰 사유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4항 1의2호에 해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무선통신 프로토콜 시험장비’는 비대면 의료기기에서 송수신되는 무선 신호의 작동 성능과 전파 안전성 검증에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비임
- 현재 수행중인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3차년도 사업기간 내 원활한 장비 조달 및 사업비 지급을 위한 긴급 입찰이 필요함

2024.08.27.

연구개발본부
기반활용센터장 오 동 기 (인)